

# 규정/REGULATION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

관련 항목:	COA-RB, DJA-RA, ECK-RA, GCA-RA, GCC, GCC-RA, IJA-RC, IRB-RA, JHC, JHC-RA
책임 부서: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Development;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Division of Financial Management

### MCPS 직원, MCPS 채용 후보자,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원 조회 Background Screening of MCPS Employees, Candidates for MCPS Employment, Contractors, and Volunteers

#### I. 목적

- A. 모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직원과 특정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학대 및 방임을 식별, 보고, 예방하기 위한 최신 관행에 대한 교육 요건을 설정하고, 모든 MCPS 직원, 채용 후보자, 특정 계약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신원 조회 요건을 확립합니다.
- B. 신원 조사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1. 지문 기반의 전국 및 주 형사 기록 확인
  2.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MCDHHS) 아동 복지 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s-일반적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CPS]로 알려짐)로부터 해당 개인이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사건에서 조사 대상인지, 또는 표시된(indicated), 입증된(substantiated), 혹은 입증되지 않은(unsubstantiated)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판단

## II. 정의

- A.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는 규정의 목적상, 지문 기반의 전국 및 주 형사 기록 확인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차는 MCPS를 통해 완료되어야 하며, Maryland 주 법적 데이터베이스인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CJIS)을 통한 전체 지문 지원 형사 기록 조사를 포함합니다. 형사 배경 결과는 일반적으로 Maryland 주와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의 Rap Back(아래 참조)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7 일 이내에 MCPS 로 접수됩니다. CJIS 에는 성범죄자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Rap Back 은 참여 기관에 대한 통지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 B. *CPS 클리어런스 확인(CPS clearance check)* 이란 개인이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사건에서 조사 대상이거나 '표시된', '입증된', 또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가 판단하도록 Montgomery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 Welfare Services(CPS)에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PS 의 클리어런스 확인에는 Maryland 주 전역의 자동화된 사례 관리 시스템인 메릴랜드 아동 전자 사회 서비스 정보 교환(Maryland Children's Electronic Social Services Information Exchange-MD CHESSIE), 부서의 Client Information System(CIS), 또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조사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CIS 의 구성 요소인 중앙 등록부(Central Registry-CIS) 또는 기타 기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검토가 포함됩니다.
- C.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A disqualifying offense)*는 메릴랜드 성문화 법규(Annotated Code of Maryland) 교육 조항(Education Article) § 6-113 에 명시된 다음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 a) 메릴랜드 형법 조항(Criminal Law Article of the Maryland) §3-307 또는 §3-308 에서의 3, 4 도인 성범죄와 다른 주법의 위반이 Maryland 에서 Criminal Law Article §3-307 또는 §3-308 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 b) 아동 성학대에 대한 Maryland 주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3-602)을 위반하거나 다른 주법에서의 해당 조항을 Maryland 주에서 위반한 경우, Criminal Law Article §3-602 하의 아동 성적 학대로 간주합니다.

- c) 폭력범죄란 폭력범죄에 대한 Maryland 범죄법조항(Criminal Law Article) §14-101 을 포함하거나 다른 주의 §14-101 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경우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유괴(abduction)
  - 2) 1 급 방화(arson in the first degree)
  - 3) 납치(kidnapping)
  - 4) 살인(manslaughter), 과실치사를 제외한 살인(except involuntary manslaughter)
  - 5) 신체상해(mayhem)
  - 6) 상해(maiming)
  - 7) 살인(murder)
  - 8) 강간(rape)
  - 9) 강도(robbery)
  - 10) 자동차 강도(carjacking)
  - 11) 무장 자동차 강도(armed carjacking)
  - 12) 1 급 성범죄(sexual offense in the first degree)
  - 13) 2 급 성범죄(sexual offense in the second degree)
  - 14) 총기를 사용한 중범죄 또는 기타 폭력 범죄 저지(use of a handgun in the commission of a felony or other crime of violence)
  - 15) 1 급 아동 학대(child abuse in the first degree)
  - 16) 미성년자 성적 학대(sexual abuse of a minor)
  - 17) 이 목록의 1-16 번 항목에 설명된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 18) 형법 조항 § 3-315 에 따른 아동과의 지속적인 행위

- 19) 1 급 폭행(assault in the first degree)
  - 20) 살인 의도를 가진 폭행(assault with intent to murder)
  - 21) 강간 의도를 가진 폭행(assault with intent to rape)
  - 22) 강도 의도를 가진 폭행(assault with intent to rob)
  - 23) 1 급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a sexual offense in the first degree)
  - 24) 2 급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폭행(assault with intent to commit a sexual offense in the second degree)
- D. *교육구 준수 교육(The Districtwide Compliance Training)*은 모든 성인과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건강하고 합법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든 직원이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MCPS 에서 제공하는 필수 연간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Maryland 법률 및 규정 JHC-RA 에서 요구하는 아동 학대 및 방임 인지 교육이 포함됩니다.
- E. *지역 법 집행관(Local law enforcement officers)*은 MCPS,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Montgomery 카운티 보안관실, Rockville 시 경찰국, Takoma Park 경찰국, Takoma Park 카운티 주 검찰청 간에 현재 유효한 양해각서(Memoranda of Understanding)의 당사자인 법 집행 기관의 현직 경찰관을 의미합니다.
- F. *MCPS 계약자(MCPS contractor)*는 MCPS 와의 계약에 의해 확립된 대로 MCPS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에는 계약 주체의 직접 직원과 계약자가 MCPS 와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및/또는 독립 계약자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특정 계약자 관련 절차는 MCPS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의 MCPS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 G. *MCPS 직원* 대체 교사 및 임시 직원을 포함하여 MCPS 에 고용된 자격증 소지 또는 비자격증 소지 인력을 의미합니다.
- H. *An MCPS 채용 후보자(employment candidate)*는 면접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신원 조사를 조건으로 잠정적인 채용 제의를 받은 MCPS 채용

지원자를 의미합니다. "긴급 채용 직원(emergent employee)"은 Maryland 법률에 따라 고용 이력 검토를 완료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 I. 미국 연방 수사국(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은 체포 및 기소 기록 후속 조치(*Rap Back*) 프로그램: 승인된 정부 기관이 형사 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신원 조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Rap Back 은 개인의 형사 기록 변경 사항을 MCPS 에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J. 교육구 전체 준수 교육(The Districtwide Compliance Training) (*CAN training*)은 MCPS 규정 JHC-RA, 아동 학대 및 방임 보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t*)를 이행하기 위해 확립된 교육이며, 모든 직원, 특정 계약자, 특정 자원봉사자에게 필수입니다.
- K. 등록된 성범죄자(Registered sex offenders:*Registrants*)는 Maryland 법률 및 MCPS 규정 COA-RB, MCPS 부지 내 등록된 성범죄자(*Registered Sexual Offenders on MCPS Property*)에 따라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교 부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L. *학생에 대한 감독 없는 접근(Unsupervised access to students)*이란 Maryland 법률에 정의된 대로, 학교 수업 시간 또는 MCPS 후원 활동 중에 물리적 또는 가상 공간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감독되지 않으며 통제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M. *자원봉사자(volunteer)* 는 MCPS 규정 IRB-RA, *학교 내 자원봉사자(Volunteers in Schools)*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MCPS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기부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II. 신원조사 절차

- A. MCPS 채용 후보자 및 긴급 채용 직원
  - 1. Maryland 법에 따라, 모든 채용 후보자는 범죄 기록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는 MCPS 에서의 최초 근무일 이전에 MCPS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2. 모든 채용 후보자는 또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a) 모든 범죄 유죄 판결, 판결 전 보호 관찰 처분, 형사 책임 없음 처분, 또는 최종 처분되지 않은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의 존재를 공개하는 서면 진술 또는 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 b) 지원자의 고용 이력에 나열된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아동 성 학대 및/또는 성적 비행 이력을 확인하는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c) Maryland 법에 따라, MCPS 는 위에 명시된 정보 및 기록 검토가 계류 중인 동안 최대 60 일 동안 채용 후보자를 "긴급 채용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는 Maryland 법에 명시된 추가 요건에 따릅니다. 긴급 채용 직원을 고용한 후 60 일 이내에, MCPS 는 필수 고용 이력 검토를 근거로 긴급 채용 직원의 고용 제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채용 후보자는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 B. MCPS 직원

1. 일단 채용되면, MCPS 는 위에 정의된 모든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Rap Back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 모든 직원은 연례 교육구 전체 준수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모든 직원은 MCPS 규정 GCC-RA, *교직원의 형사상의 체포, 구형, 유죄 자진보고(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를 완료해야 합니다.

#### C. MCPS 계약 직원

1. MCPS 계약자는 등록된 성범죄자 및 성범죄, 아동 성 학대 및 기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MCPS 계약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Maryland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Code of Maryland 교육 조항 § 6-113 은 MCPS 가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또는 이의 없음(nolo contendere)을 인정한 계약자를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이 가능한 학교 부지 내 작업에 고의로 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a) 각 계약자는 해당 계약자의 직접 직원과 계약자가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MCPS 학교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하청업체 및/또는 독립 계약업체의 직원이 이 의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b) 또한 계약업체는 매년 및/또는 계약업체 및/또는 하청업체가 계약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인력에 변동이 있을 때 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학생에게 직접, 감독 없이, 통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MCPS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계약자 또 계약자의 직원은 신원 조사를 받고,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치며, CAN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3. MCPS 계약자는 MCPS와의 협약 및/또는 양해각서(MOU)의 조항 및 조건을 따릅니다.
4. 규정 DJA-RA, *장비, 물품 및 서비스 조달(Procurement of Equipment, Supplies, and Services)*에 따라, Division of Financial Management, DFM는 MOU 또는 협약에 명시된 신원 조회 및 교육 요건의 이행을 포함하여 계약 조항 및 조건의 이행을 책임집니다.
- a) DFM은 이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DHRTM와 협의해야 합니다.
  - b) 계약자 인력의 개인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MCPS 부지에서의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1) 해당 개인에 대한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 결과가 MCPS에 접수되었고, 계약자가 이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었을 때
    - 2) 계약자가 해당 개인이 CAN 교육을 완료했음을 MCPS에 증명했을 때
  - c) 위 4(b)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하게 될 개인에게는 MCPS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 d) 계약자에게 신분증이 발급되는 경우, 서비스가 수행되는 건물 또는 장소의 MCPS 책임 직원은 각 계약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e) 계약자에게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수행되는 건물 또는 장소의 MCPS 책임 직원은 해당 개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규정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MOU 또는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심사 및 교육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DFM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 D. MCPS 자원봉사자

1. 규정 IRB-RA, *학교에서의 자원봉사(Volunteers in School)*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자원봉사자의 선발, 매치, 교체에 관한 결정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 MCPS 는 자원봉사자가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할 가능성에 따라 신원 조회, CPS 클리어런스 확인 및 CAN 교육 요건을 설정합니다.
3. 교장/지정인/또는 기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신원 조회 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이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CAN 교육 및/또는 신원 조사가 요구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은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원봉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b)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CAN 교육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 c) 해당하는 경우, 지문 채취 비용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스크리닝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합니다.
4. 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DHRTM 은 자원봉사자가 신원 조사를 완료한 후 지속적인 Rap Back 모니터링을 책임집니다. DHRTM 은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을 결정하고, 해당 개인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교장/지정인/또는 기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게 통지합니다.

5. 예상되는 자원봉사 업무 및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심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스크리닝 또는 교육이 필요 없음(No screening or training required)
    - 자원봉사를 감독하는 MCPS 직원이 판단했을 때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개인은 CAN 교육을 완료하거나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교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있을 단일 행사 자원봉사자 (예: MCPS 페어, 학교 조회 또는 학급 파티; 교실 초청 스피커/연사 또는 초청 낭독자; 대회 심사위원)
      - 2)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카페테리아에서 자녀와 식사를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자원봉사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b) CAN 교육 필요(CAN training required) - 학생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하지는 않지만, 한 번 이상 또는 특정 유형의 활동에 자원봉사하는 개인은 추가적인 신원 조회 없이 CAN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원봉사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학년당 한 번 이상 쉬는 시간, 구내식당, 학교 지도 업무 또는 교실이나 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개인
    - 2) 오후 7시 이전에 끝나는 현장 학습 또는 체육 행사 자원봉사자
    - 3) 반 교실 담당 학부모(Room parents)
    - 4) 비직원 과외 활동 또는 교과 외 활동 자원봉사자 (예: 마칭밴드)

- c) CAN 교육 및 신원 조회 필요(CAN training and background screening required) - 학생에게 지속적이고/또는 감독 없는 접근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개인은 CAN 교육,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1 박 현장 학습 자원봉사자(1 박 Smith Center 야외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 포함)
  - 2) 오후 7 시 이후 또는 Montgomery 카운티 외곽으로 확대되는 여행/현장학습의 자원봉사자
  - 3) 자원봉사자가 분과실(breakout room)을 책임질 수 있는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 4) 유급 코치의 감독하에 있으며 MCPS 자원봉사 코치 스포츠 지원서 및 계약을 완료한 자원봉사 코치
3. 이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CAN 교육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는 매년 CAN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4. 위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CAN 교육,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은 모든 자원봉사 업무나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MCPS 를 통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박 또는 저녁 현장 학습에 동행하는 자원봉사자는 여행 최소 7(업무일)일 전에 모든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5. 모든 자원봉사자는 학교 부지 방문 시 규정 ABA-RB, *학교 방문자 (School Visitors)* 에 따라 방문자 관리 시스템(VMS)에 스캔할 미국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미국 주 또는 워싱턴 D.C.에서 발행한 사진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직원이 해당 개인의 이름을 VMS 키오스크에 수동으로 입력한 다음, 미국 법무부 전국 성범죄자 등록 웹사이트를 검색합니다.
  6. 본 규정에 명시된 신원 조회 절차를 완료한 현직 직원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새로운 지문 신원 조사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장은 DHRTM 을 통해 이러한 요건의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지정된 학교 행정관만이 잠재적 자원봉사자의 신원 조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학교 기반 직원이며, 이는 승인되지 않은 직원이나 다른 자원봉사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8. 등록된 성범죄자(Registrant)는 어떤 상황에서도 MCPS 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E. 퇴직/재고용된 직원 이전에 MCPS 에 고용되었으며 이후 퇴직했거나, 근무 중단 기간이 있어 재고용되는 모든 직원은 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직 기간이 단 1 일에 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F. 대체, 대리 교사/임시 직원(Substitute/Temporary) 대체 직원 및 임시 직원은 채용 후보자 및 직원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G. 심판/스포츠 관계자 (Referees/Athletic Officials) 모든 스포츠 관계자 및 심판은 계약자이며, 해당 MOU 또는 계약에 명시된 신원 조회 요건을 따릅니다.
  - H. 학생 교사 (Student Teachers) 학생 교사는 아동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하거나 학생 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신원 조사를 받고,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획득하며, 교육구 전체 준수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를 수용하는 학교 또는 사무실은 이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I. 학생 인턴 (Student Interns) MCPS 에 임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생 인턴 (제 3 자 기관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MCPS 학생은 포함되지 않음)은 아동에게 감독 없는 접근을 하거나 학생 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신원 조사를 받고,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획득하며, 교육구 전체 준수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 인턴을 수용하는 학교 또는 사무실은 이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J. 경찰 제복을 입고 부업으로 학교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법 집행관 (Local law enforcement officers). (위에 정의됨)
    1. Montgomery 카운티 경찰국, 보안관(Sheriff) 부서 또는 기타 여러 부서에 의해 MCPS 내에 커뮤니티 참여 담당관(Community

Engagement Officers, CEO)으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고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인력은 CEO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MCPS 에 의한 추가 지문 신원 조회 또는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CEO 는 CAN 교육을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위에 정의된 지역 법 집행관 중, 경찰 제복을 입고 MCPS 를 위해 학교 보안, 행사 보안 또는 관련 기능 분야에서 추가적인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MCPS 로부터 급여를 받는 인력은 Montgomery 카운티 Police Department, 보안관(Sheriff) 부서 및 기타 여러 부서에서 이미 부과한 요건 외에 추가적인 신원 조회 및 지문 채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각 부서의 지정인은 집행관이 퇴직, 사임 또는 해당 부서에서 부과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더 이상 없을 경우 MCPS 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위에 정의된 지역 법 집행관 중, 학교 보안과 관련이 없는 MCPS 내 다른 유급 업무 (예: 유급 코칭 또는 대체 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력은 해당 직책에 대한 MCPS 신원 조회, CPS 클리어런스 확인 및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K. 외부 환경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는 성인(Adults who interact with students in off-site arrangements)

1.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이중 등록 프로그램(dual enrollment programs)에 참여하거나, MCPS 와의 협약에 따라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교 밖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법률 및 MCPS 요건을 준수하는 범죄 신원 조회 및 지문 채취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하거나, 해당 직원은 학생을 감독하기 위해 MCPS 지문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또한, 프로그램 또는 인턴십 하에서 MCPS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참여 외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은 CAN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L. Rap Back 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1. MCPS 신원 조사를 완료하면 해당 개인은 Rap Back 에 등록됩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Rap Back 에 등록된 후 해당 개인이

MCPS 에 고용, 자원봉사 또는 계약하는 동안에는 Rap Back 을 통해 해당 개인의 범죄 기록이 모니터링됩니다.

2. MCPS 는 DHRTM 의 판단에 따라 개인이 소속된 서비스를 떠나거나 MCPS 가 더 이상 범죄 기록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Rap Back 에서 해당 개인의 정보를 삭제합니다.
3. 개인은 서비스 분리 시 Rap Back 을 통한 MCPS 의 모니터링 중단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을 DHRTM 에 할 수 있습니다.

### III. 적격 여부

- A. MCPS 는 신원 조회 결과, CPS 클리어런스 확인 및 지속적인 Rap Back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직원, 채용 후보자, 계약자, 자원봉사자 또는 기타 개인이 "적격(eligible)"인지 "부적격(ineligible)"인지 결정합니다. DHRTM 은 이러한 적격성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 B. 적격성 결정은 신원 조회 및 Rap Back 모니터링 결과 및/또는 기타 관련 문서나 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합니다. MCPS 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MCPS 인사 파일에 보관된 정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 Maryland 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MCPS 고용에 부적격합니다.
- D. 신원 조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는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원봉사에 부적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인 지침으로, 자원봉사자나 계약자에게 MCPS 고용에 부적격하게 만들 수 있는 고발, 유죄 판결 또는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MCPS 에서 자원봉사자나 계약자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 E. 신원 조회 및/또는 CPS 클리어런스 확인에 1) 마약 또는 기타 규제 약물 배포 관련 범죄에 관한 정보, 2) CPS 조사 완료 후 "표시된(indicated)"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판정으로 인한 피고발 학대자 또는 태만자로서의 식별, 또는 3) Annotated Code of Maryland (Maryland 법), 교육 조항 § 6-113 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된 계류 중인 고발 또는 체포가 포함된 경우, MCPS 는 개별 사례 분석을 수행하여 적격성을 결정합니다.

- F. 위 (C) 및 (E)에 나열된 범죄 및 CPS 판정 외에도, 개별 사례 분석이 수행된 후에는 다른 범죄(들)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계류 중인 형사 고발을 기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격 및 빈도, 범죄 또는 고발 이후 경과된 시간, 그리고 특히 MCPS 학생의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등 해당 개인을 고용하거나 MCPS 자원봉사자로 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G. 위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유죄 판결도 MCPS 고용에서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H. DHRTM 이 자원봉사자가 MCPS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을 부적격하게 만드는 새로운 고발 또는 유죄 판결을 보고하는 형사 기록 업데이트를 받는 경우, DHRTM 은 해당 개인이 자원봉사 자격이 없음을 학교 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교장은 자원봉사자가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IV. 채용 후보자 및 직원에 대한 적법 절차

- A. 채용 후보자 및 직원은 여기에 명시된 모든 필수 단계가 완료되고 DHRTM 이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개인의 근로를 승인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B. 이 규정에 따라 채용 후보자 또는 직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DHRTM 은 해당 개인에게 통지 및 응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C. MCPS 는 직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추가 정보, (예: 고발 문서 사본 및 그에 따른 형사 소송의 처분)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 MCPS 에서의 지속적인 고용 또는 채용 절차의 계속은 법원 및 경찰 기록에 반영된 범죄 행위의 상황과 해당 개인의 설명에 달려 있습니다.
- E. 고용 지원서에 범죄 행위를 고의로 허위 진술한 채용 후보자는 고용 고려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 F. 범죄 행위를 고의로 허위 진술했거나 규정 GCC-RA, *직원의 체포, 형사 고발 및 유죄 판결 자(Staff Self-reporting of Arrests, Criminal Charges, and*

*Convictions*)가 보고에 따라 특정 범죄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 지문 신원 조회 및 CPS 클리어런스 확인 결과 사본은 직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됩니다.

#### V. 수수료

- A. 채용 후보자 및 계약자 – 용 후보자 및 계약자는 신원 조회 전체 비용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채용 후보자 및 잠재적 계약자에 대한 신원 조회 수수료는 DHRTM 이 설정합니다.
- B. 자원봉사자 – 교육위원회 정책 ABC, *가족-학교 파트너십(Family-school Partnerships)*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부모/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 지문 채취 비용이 학부모/보호자의 자원봉사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지문 채취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정보는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며 감독하는 MCPS 직원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VI. 지문 채취 장소 및 관련 정보

- A. 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신원조회는 MCPS 웹사이트에 명시된 장소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 B. 신원 조회는 개인 정보 (사회 보장 번호 포함), 지문 및 사진 공개를 요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는 DHRTM 을 통해 대체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 MCPS 에 의해 지문이 채취되는 모든 개인은 형사 기록 보고서에 대한 서면 승인 및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34 U.S. Code §20962 - Schools Safety Acquiring Faculty Excellence Act of 2006 (“Schools SAFE Act”); Annotated Code of Maryland (MD Code), Education Article, §6-113, §6-113.1, and §6-113.2; MD Code, Family Law Article §5-551-§5-553; MD Code, Criminal Procedure Article, §11-

722; MD Code, Criminal Law Article, §3-307, §3-308, §3-602, §14-10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15.02.07B(1)-(11)

**규정 변경사:** 신규 규정, 2025년 11월 13일 승인; 2026년 1월 1일 발효.

#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인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하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http://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mailto: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mailto: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mailto: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http://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mailto: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mailto: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하십시오.